P - 32 - 2012

산소공급설비의 안전기술지침

2012. 7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 : 김 기 영
- O 개정자 : 최 이 락
- O 제·개정 경과
 - 2010년 8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NFPA 50, "Standard for Bulk Oxygen Systems at Consumer Sites", 2001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산소공급설비의 안전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소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산소를 사용하는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 산소 공급 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산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부지 내에 설치되어 산소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설비에 적용한다. 다만, 산소 제조설비 및 이동식실린더, 트레일러, 이송탱크차량 등에 산소를 충전하기 위한 저장설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산소공급설비 (Bulk oxygen supply system)"라 함은 산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지 내에 설치되어 산소를 공급하는 설비로써 표준상태에서 365 m³ 이상의 용량을 가진 저장탱크, 압력조절장치, 안전장치, 기화기, 배관시스템등을 포함한 설비 일체를 말한다.
 - (나) "인화성 가스"라 함은 대기상태에서 폭발하한이 13% 이하이거나 폭발하한에 상관없이 폭발범위가 12% 이상인 가스를 말한다.
 - (다) "인화성 액체"라 함은 인화점이 37.8 °C 이하이고 37.8 °C에서 증기압이 276 kPa인 액체 및 인화점이 37.8 °C를 초과하는 모든 액체를 말 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 준에관한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P - 32 - 2010

4. 산소공급설비의 배치

4.1 위치

- (1) 산소공급설비는 벽과 지붕이 없는 장소의 지상에 설치하거나 내화 또는 불연성/준불연성 재질로 축조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환기되고 산소공급설비 전용 건축물이어야 한다. 또한 산소공급설비 위로 전력선,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의 배관이 지나가서는 아니 되며 전기선 및 배관에 의하여 위험이 야기되어서도 아니 된다.
- (2) 산소공급설비는 산소공급용 차량 및 관련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지붕 및 철 구조물 위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.
- (3) 대량의 액체산소 저장탱크, 충전 및 하역용 탱크차량과의 연결쇠, 안전밸브의 토출 관의 끝단 등은 지하배수설비의 입구로부터 최소한 2.5 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
- (4) 액체산소 저장탱크의 입·출하용 연결쇠 주위 바닥은 최소한 반경 1 m 이상을 불 연재로 시공하여야 한다. 또한 액체산소 공급차량이 하역을 위하여 위치하는 장소 의 크기는 차량의 전체 너비 및 차량의 축 방향으로 2.5 m 이상이어야 하며 그 바 닥은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. 포장된 장소에 신축 이음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음매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 포장된 지면이 경사진 경우에는 누 출된 액체산소가 주위의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산소공급설비가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 저장·저장 취급설비보다 낮은 강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 저장·저장 취급설비 주위에는 방유둑 등을 설치하여 액체산소공급설비가 설치된 장소로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가 흘러가지 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4.2 주위 시설물과의 이격거리

- (1) 산소공급설비와 목재로 만들어진 건축물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15 m 이상이어야 한다.
- (2) 산소공급설비와 목재로 만들어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0.3 m 이상이어야 한다.

- (3) 산소공급설비와 주위 건축물의 벽에 설치된 개구부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3 m 이 상이어야 한다. 이 항은 고압의 가스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산소공급설비의 모든 장치에 적용하며, 액체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압력조절장치, 안전장치, 기화기 및 관련 배관시스템에만 적용한다.
- (4) 산소공급설비와 지상에 설치된 인화성 액체를 저장·취급하는 설비 사이의 거리는 <표 1>과 같다. 다만 인화점이 93.4 ℃ 이상인 액체를 저장·취급하는 경우에는 4.5 m로 할 수 있다.

<표 6> 설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

거 리(m)	용 량(V, m³)
7.5	V ≤ 4
15	4 < V

(5) 산소공급설비와 지하에 설치된 인화성 액체를 저장·취급하는 설비 사이의 거리는 <표 2>와 같다.

<표 7> 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

산소공급설비와 인화성	산소공급설비와 인화성 액체의 충전용
액체 설비 사이의	연결쇠. 환기구 및 개구부 사이의
수평거리(m)	수평거리(m)
4.5	7.5

(6) 산소공급설비와 지상에 설치된 인화성 가스를 저장·취급하는 설비 사이의 거리는 <표 3>과 같다.

<표 8> 가스설비와의 거리

인화성 가스의 종류	량(V, m³)	거리(m)
액화 수소	임의	22.5
기타 액화가스	$V \leq 4$	7.5
	4 < V	15
비액화 또는 용해가스 ^{주1)}	V ≤ 710	7.5
	710 < V	15

주) 1. 표준 상태에서의 량임

(7) 산소공급설비와 대패밥, 톱밥 또는 종이 등과 같이 신속하게 불이 붙는 고체물질 과의 거리는 최소한 15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.

P - 32 - 2010

- (8) 산소공급설비와 석탄 및 중목재(Heavy timber)와 같이 천천히 불이 붙는 고체물 질과의 거리는 최소한 7.5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.
- (9) 산소공급설비와 그 주변에 설치한 방화벽(방화벽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높이 3.7 m 이상인 경우에 한 함)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22.5 m 이상이어야 한다. 방화벽이 3면으로된 경우에는 최소한 11 m로 단축시킬 수 있다.
- (10) 산소공급설비와 공공장소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15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.
- (11)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있는 건물은 산소공급설비의 안전장치 토출측 배관의 끝단 및 충전/하역용 연결쇠로부터 최소한 15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.
- (12) 산소공급설비와 공용 도로 및 주차장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3 m 이상 이격되어 야 한다.
- (13) 산소공급설비와 사업주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1.5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.
- (14) (1)호, (4)호 내지 (8)호, (12)호 및 (13)호에서 규정하는 거리는 최소 2시간의 내화성능을 가진 방화 구조물로 산소공급설비의 단열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과 노출물을 사이를 차단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 이 경우에 산소공급설비와 주위구조물 사이에는 최소 0.3 m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
5. 산소공급설비의 제작 및 설치

5.1 대량 산소 저장탱크

- (1) 산소공급설비는 불연재로 된 기초 및 불연재료로 된 지지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액체산소저장탱크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.
 - (가) KS B 6750 "압력용기-설계 및 제조 일반"의 내충격 시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. 게이지 압력으로 103 kPa를 초과하는 압력에서 운전되는 액체산소저장탱크는 KS B 6759 "압력용기-설계 및 제조 일반"에 따라설계, 재작 및 시험해야 한다. 또한 액체산소저장탱크의 보온은 불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 - (나) 4 L 용량의 액체산소저장탱크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라 설계,

P - 32 - 2010

제작, 시험 및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- (3) 고압의 가스 상태인 산소를 저장하는 탱크는 다음 각 호에 제작하여야 한다.
 - (가) KS B 6750 "압력용기-설계 및 제조 일반"에 따라 설계, 제작 및 시험해야 한다.
 - (나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라 설계, 제작, 시험 및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5.2 배관 시스템

- (1) 관, 튜브 및 피팅은 산소 취급에 요구되는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2) 배관 시스템에 대한 재질 및 두께 요구사항은 KOSHA GUIDE "배관두께 계산 및 평가 기술지침" 또는 ANSI/ASME B31.3 "Process Piping"에 따라야 한다.
- (3) -29 ℃ 미만에서 운전되는 배관 시스템에 사용되는 관 및 튜브는 그 시스템의 최저 운전온도에서 시험할 때, KOSHA GUIDE "배관두께 계산 및 평가 기술지침" 또는 ANSI/ASME B31.3 "Process Piping"의 내충격성 시험 요구사항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5.3 안전장치

- (1) 설계압력과 관계없이 산소공급설비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액체산소저장탱크의 이중 외부탱크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모든 안전장치는 수분이 체류되거나 동결되어 안전장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.

5.4 액체산소 기화기

- (1) 기화기는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그 연결 배관은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 및 수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기화기의 산소 측과 가열유체 측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P - 32 - 2010

- (3) 기화기의 열원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스팀, 공기, 물 또는 수용액과 같은 열매체를 이용한 간접가열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4) 기화기의 열원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열기는 접지하여야 한다.

5.5 장치의 조립 및 설치

- (1) 산소공급설비는 설치하기 전에 오일, 그리스, 용매, 이물질 및 기타 산화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.
- (2) 배관 및 튜브의 연결은 용접 또는 납땜으로 연결하거나 플랜지, 나삿니, 일부 삽입 식, 전부 삽입식 등의 연결쇠를 사용한다. 가스킷 및 나삿니 밀봉제는 산소에 적합 한 재질이어야 한다. 납땜은 약 400 ℃ 이상의 용융점을 가져야 한다.
- (3) 밸브, 압력계, 압력조절기 및 기타 부속품은 산소 취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- (4) 산소공급설비의 설치는 산소 관련 설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.
- (5) 모든 배관 시스템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최대운전압력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하고 누설 부분이 없어야 한다. 압력시험용 유체는 오일이 없어야 하며 비인화성이어야 한다.
- (6) 저장탱크, 배관, 밸브, 압력조정장치 및 기타 부속품은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. 일반인이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.
- (7) 산소 제어 또는 운전설비의 설치장소는 적절히 환기하여야 한다.
- (8) 산소공급설비 주위에는 "산소-금연-나화금지" 등과 같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.
- (9) 전기설비는 비방폭형을 사용하나 산소 취급설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
6. 운전지침 및 유지관리

6.1 운전지침

(1) 대량 산소 공급설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운전지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P - 32 - 2010

- (2) 운전지침에는 정상운전, 시운전, 비상운전, 운전정지 등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(3) 운전지침은 운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(4) 운전원에게 운전지침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. 특히 설비 등이 변경 또는 추가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6.2 유지관리

- (1)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- (2) 유지관리에 관련된 근로자에게 유지관리 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.
- (3) 설비를 매년 검사하여야 하여야 하며 검사는 경력이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공급시설 주위 4.5 m 이내에는 인화성이 있는 잡초, 마른 풀, 나무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.